

※ 모든 서류는 원본 및 **입주자 모집공고일(21년 2월 19일)** 이후 날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추가 (해당자)			
<input type="radio"/>		인감증명서	본인	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– 본인발급용」로 대체 가능
<input type="radio"/>		신분증(사본)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 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,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 기간 : 출생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공고일 현재)
	<input type="radio"/>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<input type="radio"/>	출입국사실증명서	세대원	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)
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)
<input type="radio"/>	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<input type="radio"/>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 (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시)	청약신청자(세대주)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]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]
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사실증명서		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※ 조회기간 :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)
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 해야하는 경우
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사실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 (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시)	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※ 조회기간 :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)
<input type="radio"/>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초본		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]
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
※ 계약구비서류(인감증명서, 인감도장)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,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대리인 계약 시 본인 계약 시 필요 서류 일체와 계약자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추가1통/본인발급용)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, 신청 위임장(견본주택비치)이 필요합니다.

※ 당첨자 서류 적격 검수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/ 상기 사항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이 우선합니다.